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60호 2010. 5. 24.(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11호 도로(변경)지정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38호 공고문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11호

도 로(변경) 지 정 공 고

아래의 도로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변경 지정·공고합니다.

□ 건축물대장 분리 현황

- 건축주 : 우세영 외 25인
- 대지위치 : 인천 서구 가좌동 180-175 외 27필지
- 용 도 : 공 장
- 건축구분 : 건축물대장 분리 (건축물대장 19건)
- 건축규모 : 연면적 14,571.81㎡ (27개동)

□ 도로현황

관련 지번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비 고
가좌동 180-185	619.00	김형진, 김홍균	718.60	
가좌동 573-15	99.60	김형진, 김홍균		
가좌동 180-194	529.00	김형진, 김홍균	603.20	
가좌동 573-20	74.20	김형진, 김홍균		

□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0. 5.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38호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지정기간 : 2010년 5월 31일 ~ 2011년 5월 30일
2. 재지정 지역 : 2010년 5월 30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마창진권 포함) 개발제한구역 3,323.35km²와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3559.56km²(다만, 2010년 5월 30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km ²)
	합 계		6,882.91
	소 계		3,323.35
수도권·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	1461.23
	부산권	부산광역시(동래구·북구 제외), 경상남도 김해·양산시	456.29
	대구권	대구광역시(서구·중구·남구 제외)	369.06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290.1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연기, 충청북도 청원군	390.35

	울산권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120
	마창진권	경상남도 마산·창원·진해시	236.32
	소 계		3,559.56
수도권 녹지· 용도미 지정· 비도시 지역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중구, 동작구, 성동구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88.03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396.47
	경기도	경기도(안성·안산·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포천·동두천시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3,075.06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5.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이관된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사항중 아래 사무 추가 위임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3, 팩스 560-40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주민생활지원과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생활 지 원 과	1	<p>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p> <p>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p> <p>나.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p> <p>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의 폐쇄등</p> <p>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소)심사 청구 등</p> <p>마. 정신질환자의 퇴원(소), 임시퇴원(소), 처우개선 명령,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통지 등</p> <p>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p> <p>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발급</p> <p>아. 정신질환자 진단·치료비용 징수 및 통지</p>	<p>「정신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p> <p>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p> <p>같은법 제18조</p> <p>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p> <p>같은법 제29조, 제33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p> <p>같은법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p> <p>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p> <p>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p>	
---------------	---	---	--	--

주민생활 지 원 과	2	<p>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p> <p>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 정지 등</p> <p>다. 청문</p>	<p>「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p> <p>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p> <p>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호</p>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